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매니저 공개채용 면접전형 결과 안내

매니저(4급)-면접전형 결과

- 최종합격자 : 100003
- 예비합격자 : 1순위 100002
 2순위 100004

매니저(5급)-면접전형 결과

- 최종합격자 : 적격자 없음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및 중도포기하는 경우 임용
심의

※ 예비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24.05.03.)로부터 3개월
이내('24.08.02.)까지 유효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매니저) 공개 채용 합격자로서 동센터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등록하십시오.

- | | |
|---------------------------------------|----------------|
| 1. 등록기간 | 첫 출근일 제출 |
| 2.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
| 3. 구비서류 | |
| ①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을 부착하십시오 | 1매 |
| ②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1매 |
| ③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1매 |
|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 1통 |
| ⑤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 경우 한함.) 및 기타 증빙서류 | 1통 |
| ※국민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
| ⑥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1통 |
| ⑦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 1통 |
| ⑧ 사진(반명함판, jpg파일 별도제출) | 2매 |

※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철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되 등록원서에 반드시 사진을 부착
(응시원서 제출시 기제출한 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

등록 번호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수험 번호
1. 성명 한글 (한문) ()		2. 생년월일 .(만 세)	4.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5. 시험합격종별 ○	※ 등록심사 사진 대조 서류 심사
7. 현주소	① (전화) 번				(사진첨부) ※ 반명함판
	② (전화) 번				
8. 병역	필	ㄱ. 역종 ㅁ. 군번	ㄴ. 군별 ㅂ. 입대년월일	ㄷ. 병과 ㅅ. 제대년월일	ㄹ. 계급
	미필				
9. 학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부문, 과목	
10. 자격, 면허					
년 월 일	종 별			발행기관	
11. 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12. 가족사항

본인과의관계	성명	비고

13. 첨부서류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체크리스트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2024년 월 일

출원자인

(인)

21.
우
무
인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 · 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1, 2, 3-1, 3-2 (모두 총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1, 2, 4-1, 4-2 (모두 총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채용방법	공개채용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매니저) 공개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